

「Big Pot 통장」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“BIGPOT 통장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과 『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』, 『하나 증권계좌저축 특약』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은 보통예금, 저축예금, MMDA, 기업자유예금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하나금융투자 연계 CMA 증권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,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.

제4조 이자지급

- ①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예금의 종류별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 (이하 '원가일'이라한다)에 원금에 더합니다.
 1. 보통예금: 매년6월, 12월의 제3금요일
 2. 저축예금 및 MMDA: 매년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
- ② 제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 계산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영업일에 영업점에 게시하는 이율로 계산합니다.

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

- ① 이 예금은 신규가입 시 익월말까지 월10회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단, 기존의 다른 수수료면제 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- ② 은행은 아래에 명시된 이 예금가입자의 우대서비스 대상요건(이하 “우대요건”이라 합니다)의 월별실적을 매월 평가하여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우대요건 중 1건 충족 시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월10회까지 제공 하며, 우대요건 중 2건 충족 시 5회 면제를 추가하며, 우대요건 중 3건 이상 충족 시 무제한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요건)

1. 이 예금으로(에서) 급여이체 또는 아파트 관리비 매월 자동이체 시
2. 이 예금을 하나금융투자 증권계좌로 등록하고 월 1회 이상 증권매매 거래 시
3. 하나카드사와 당행 제휴카드사의 신용(체크)카드를 합하여 월10만원 이상 이 예금에서 결제 시
4. 은행 적립식예금과 적립식펀드를 합하여 월20만원 이상 이 예금에서 자동이체 시
5. 이 예금의 월평잔 1백만원 이상 유지 시

(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거래)

1.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시 수수료 면제
2. 자동화기기, 폰뱅킹(ARS),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시 수수료 면제
3. 이 예금과 연계된 증권계좌의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당타행이체 수수료 면제

- ③ 이 예금과 하나금융투자의 CMA 증권계좌 간의 이체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면제됩니다. 단, 창구거래는 수수료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④ 은행은 우대서비스를 예금 가입 후 5년간 제공하며, 5년 이후 은행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제6조 스윙서비스(Swing Service)

- ① 이 예금의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에 의해 예금잔액이 신청한 "기준금액"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자동 출금되어 이 예금과 연결된 증권계좌로 이체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.
- ② "기준금액"은 1백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.
- ③ 은행은 예금잔액의 "기준금액" 초과 여부를 매 영업일 영업 개시 전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, 1일1회에 한하여 영업 개시 전 증권계좌로 입금합니다.

제7조 역스윙서비스(逆 Swing Service)

- ① 이 예금의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에 의해 이 예금의 "결제자금"이 부족할 경우 이 예금과 연계된 증권계좌의 "출금가능잔액" 범위 내에서 결제부족자금만큼 자동 출금되어 이 예금으로 이체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.
- ② "결제자금"이란 KEB하나은행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 및 하나카드 결제자금으로 한정합니다.
- ③ 은행은 영업시간 종료 후 이 예금의 결제자금 부족 여부를 판단하여, 1일 1회에 한하여 영업시간 종료 후 처리합니다.
- ④ 역스윙을 통하여 이 예금으로 이체된 자금이 대출 또는 카드결제자금으로 출금되기 전에 고객의 인출 또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결제자금으로 충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제8조 기타

- ① 이 예금과 연계된 증권계좌의 CMA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증권계좌에 거래자금을 이체하거나, 별도 신청한 스윙서비스를 통하여 증권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어야 합니다.
- ② 이 예금에 가압류, 압류, 사고신고 등 예금의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5조 스윙서비스 및 제6조 역스윙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

<부칙>

본 약관은 2013년 10월 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해서 적용하며, 기 가입 계좌의 경우 10월 실적부터 평가하여 11월부터 본 약관의 우대서비스가 적용됩니다.

<부칙1>

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